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5059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이○○,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백경희, 류승민, 최재호
피 고 정○○
서울 용산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09.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갑상선암 진단에 기하여 청구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고충정 _____

 판사 김영진 _____

 판사 정윤아 _____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위 주소지에 본점을 개설하여 각종 보험 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2. 15. 피고와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9. 2. 15.까지로 하여 무배당그린라이프윈더폴보험G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갑제1호증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2.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피고는 2008. 11. 18. 시행한 미세침흡인검사결과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분자병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같은 날 분자병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이 아닌 이상 소견으로 진단받았으며, 2009. 3. 3. 갑상선 전절제술의 시행하여 2009. 3. 6. 갑상선유두암으로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3. 피고의 보험금 청구의 부당성

가. 이 건 보험약관(암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 진단시 :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진단시 : 가입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 특별약관 제2조 제5항은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다만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전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미세침흡인검사결과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태로 진단되었고, 다만 확진이 곤란하여 분자병리검사를 권유받았는데 분자병리검사결과 동연변이로 진단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건 분자병리검사결과보고서에는 '갑상샘의 세침흡인진단시 흡인된 세포의 수가 적거나 핵의 모양이 애매하여 갑상선암의 확진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때 본 검사가 양성이면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분자병리검사결과가 나온 2008. 11. 26.에는 암의 진단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갑제4호증 참조).

외, 2

다. 또한 피고는 2008. 11. 20. 미세침흡인검사결과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고, 2008. 11. 26. 분자병리검사결과 돌연변이 소견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즉시 갑상선수술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9. 3. 3.에야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 가입일이 2008. 2. 15.이어서 2009. 2. 15.이후부터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게 되는 점을 보면, 피고가 고의적으로 진단확정을 늦추기 위하여 수술을 미뤘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세침흡인검사결과 등 임상학적 진단으로도 암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0%에 해당하는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갑제5호증 참조).

4. 확인의 이익의 존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보험금지급채무를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고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유효적절한 수단은 바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기에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